#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0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인재근・소병훈・송갑석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최종윤 · 강선우 · 이해식

서영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 및「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라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 판매하는 자

-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제2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등 설치·운영) 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 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 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 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급 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급식소에 해당하 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 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 및 「식품위생 법」 제52조에 따라 급식소에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 제21조의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등에 대한 감독 · 지도) (생 략)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 |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 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 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 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 여야 한다.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현 행 제21조의2와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 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 다.

-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 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 열 · 판매하는 자
-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u>운영하는 자</u>
제29조(과태료) ①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
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